

수 원 고 등 법 원

제 2 형 사 부

구속기간갱신결정

사 건 2019노
피 고 인 김
주거

주 문

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2019. 10. 20.부터 갱신한다.

이 유

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9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
이 결정한다.

2019. 9. 30.

재판장

판사

임상기



판사

이봉민



판사

이보형

